

大田直轄市 都市整備 整頓에 따른 市稅課稅
免除에 관한 條例 廢止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1. 12. 27.

內 務 委 員 會

目 次

1. 審 查 經 過 2
2. 提 案 說 明 要 旨 2
3. 專 門 委 員 檢 討 要 旨 3
4. 質 疑 與 答 辯 要 旨 3
5. 討 論 要 旨 3
6. 審 查 結 果 3

大田直轄市都市整備整頓에 따른 市稅課稅
免除에 관한 條例 廢止 條例案
審 查 報 告

1991年 12月 27日
內 務 委 員 會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1年 12月 18日, 大田直轄市長
- 나. 回 附 日 字 : 1991年 12月 19日
- 다. 上 程 日 字 : 第7回 大田直轄市 議會 (定期會)
第6次 內務委員會(1991. 12. 23)
上程, 審議, 議決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者 : 財務局長)

- 가. 都市整備整頓 計劃에 따라 철거기로 確定된 建築物에 대하여 財産稅·課稅基準日 現在 철거를 명하는 行政指示 또는 계고서가 발부된 建築物에 대하여 都市計劃稅와 消防共同施設稅를 條例로 定하여 課稅 免除하였으나,
- 가. 地方稅法 施行令에 撤去 命令을 받은 建築物에 對하여 都市計劃稅와 消防共同施設稅의 免除 規定을 新設하기 때문에 本 條例를 廢止 하고져 함.

3. 專門委員 檢討 要旨(專門委員 : 案鍾贊)

本 案은 都市整備整頓에 따라 撤去되는 建築物에 對한 課稅 免除 規定을 市 條例로 定하여 施行하였으나 上位법인 地方稅法 施行令에 直接 關聯 條項을 新設하게 되므로 廢止코지 하는바, 妥當한 것으로 思料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 省 略

5. 討 論 要 旨 : 省 略

6. 審 查 結 果: 原案 可決

大田直轄市 都市整備整頓에 따른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廢止條例案



1991. 12. 16.

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 가. 都市整備整頓 計劃에 따라 철거기로 確定된 建築物에 대하여 財産稅 課稅基準日 現在 철거를 명하는 行政指示 또는 계고서가 발부된 建築物에 대하여 都市計劃稅와 消防共同施設稅를 條例로 定하여 課稅 免除 하였으나 ,
- 나. 地方稅法 施行令에 撤去 命令을 받은 建築物에 對하여 都市計劃稅와 消防共同施設稅의 免除 規定을 新設하기 때문에 本 條例를 廢止 하고져 함.

2. 參考事項

- 地方稅法
 - 第 7條 (公益等 事由로 인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
 - ① 地方自治團體는 公益上 其他의 事由로 인하여 課稅를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課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第 9條 (課稅免除等を 위한 條例) 第 7條 및 業 8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 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定하여야 한다.
- 條例改正許可 : '91. 11. 21. (內務部長官)
- 立法豫告
 - 期 間 : '91. 11. 23 ~ '91. 12. 12. (20日間)
 - 方 法 : 揭示公告 및 市公報 掲載 ('91. 11. 28 第 74 號)
 - 結 果 : 意見 없음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대전직할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조 (목 적) 이 조례는 도시정비 정돈계획에 따라 철거기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 (이하 “시세”라 한다)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면제대상) 이 조례는 당해 년도내에 철거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를 명하는 행정지시 또는 계고서가 발부되었거나 보상철거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 3조 (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사무처리는 당해 물건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 4조 (면제신청) ①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기간이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 확정 건축물임을 소관 과세기관에 통보하였을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 5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 828, 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1763호)

이 조례는 1989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